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□ 행정규칙명

- 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

□ 제·개정 이유

-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야 할 시설물을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8에 따른 주요 구조부로 구체화

□ 주요내용

- 동영상 촬영 및 제출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(제63조제6항, 제93조제11항, 제110조제7항제1호, 제118조제1항제4호, 제133조제2항, 제167조제1호)